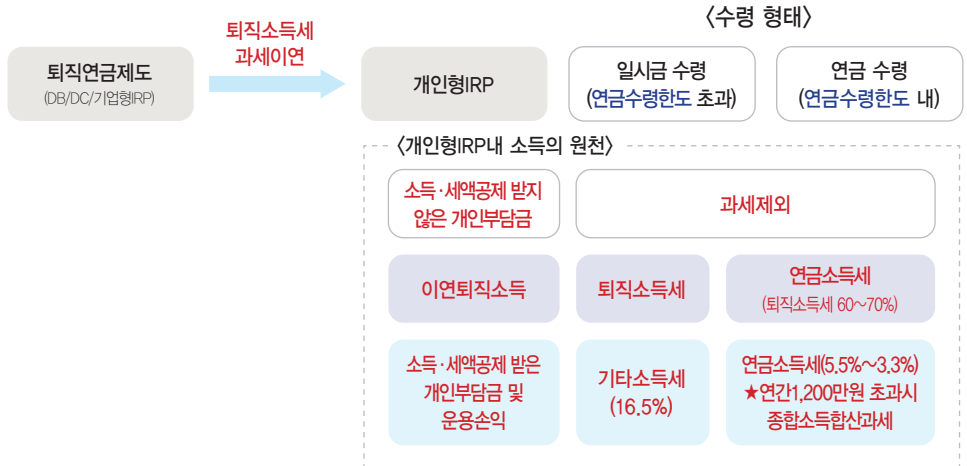


## 퇴직연금 과세체계

퇴직연금은 부담금의 납입과 운용 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, 급여 수령 단계에서 소득의 원천과 수령형태 (일시금 수령/ 연금 수령)에 따라 퇴직소득세, 연금소득세,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.



- ※ **연금수령한도** : 연금개시일 또는 매년1월1일의 연금계좌평균금액 ÷ (11-**연금수령연차**) × 1.2
- ※ **연금수령연차** :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차년도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, 10년차까지 적용. 단, 2013.3.1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는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6차년도로 하여 연금수령연차를 계산
- ※ **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은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.**  
제출서류: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(국세청 홈택스 or 관할세무서 민원실 발급)

### ■ 일시금 수령시 과세 (연금수령한도 초과금액)

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, 개인부담금과 운용손익은 기타소득세 16.5%로 과세합니다.

### ■ 연금 수령시 과세 (연금수령한도 내 금액)

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까지 퇴직소득세의 70%,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초과시 퇴직소득세의 60%로 과세 되어 퇴직소득세의 30~40%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. 연금은 소득세법 상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을 의미합니다.

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손익은 연령별 연금소득세 5.5%~3.3%로 과세됩니다. 단, 연간 사적연금(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 제외) 1,200만원 초과시 소득이 발생한 다음년도에 소득자가 종합소득 합산과세 신고 하여 세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.

\* 연령별 연금소득세 : 70세미만 5.5%, 80세미만 4.4%, 80세이상 3.3%

### ■ 퇴직소득세 계산방법

퇴직소득세는 입사일(또는 중간정산일)부터 퇴직일 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①**근속연수공제 후 환산급여**를 계산하고 ②**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**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합니다.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일 이전에 중간정산(중도인출)을 한 경우 이미 지급 받은 중간정산 금액과 합산 과세를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이때 퇴직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유/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퇴직급여	
(-) 근속연수공제	① 근속연수공제
환산급여 계산	환산급여 = (퇴직급여-근속연수공제) ÷ 근속연수 × 12배수
(-) 환산급여별공제	②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
퇴직소득과세표준	퇴직소득과세표준 = 환산급여 - 환산급여별공제
퇴직소득세	퇴직소득세 = [퇴직소득과세표준 × 세율*] ÷ 12배 × 근속연수 * 퇴직소득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

※ 근속연수 공제표

근속연수	공제액
5년 이하	30만원 × 근속연수
5년 초과 10년 이하	150만원 + 50만원 × (근속연수-5년)
10년 초과 20년 이하	400만원 + 80만원 × (근속연수-10년)
20년 초과	1,200만원 + 120만원 × (근속연수-20년)

※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표

환산급여	공제액
8백만원 이하	환산급여의 100%
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	800만원 + (800만원 초과분의 60%)
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4,520만원 + (7천만원 초과분의 55%)
1억원 초과 3억원 이하	6,170만원 + (1억원 초과분의 45%)
3억원 초과	15,170만원 + (3억원 초과분의 35%)

※ 세율표(지방소득세 별도)

과세표준	세율 및 세금계산
1,200만원 이하	6%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72만원 + (1,200만원 초과 금액) × 15%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582만원 + (4,600만원 초과 금액) × 24%
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1,590만원 + (8,800만원 초과금액) × 35%
1억5천만원 3억원 이하	3,760만원 + (1억5천만원 초과금액) × 38%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9,460만원 + (3억원 초과금액) × 40%
5억원 초과	17,460만원 + (5억원 초과금액) × 42%

※ 위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